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299 제출연월일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 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·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,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'운항관리 자 비용부담금'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수 있다.

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·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및 제2 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22조(여객선 안전운항관리) ① 제22조(여객선 안전운항관리) ① ~ ⑥ (생 략) ~ ⑥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 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 원할 수 있다. <삭 제> 제22조의2(운항관리자 비용부담 | 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)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 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 용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 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(운항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)으 로 하며,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 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

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- 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 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·가산금·과 오납금·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 를 확인·조사하여야 한다. 다 만,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의3(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) ① 부담금의 납 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

<삭 제>

- 역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(이하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으로 부 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.
- 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 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 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,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지출비용은 물가상승률(2.5%)을 반영하였으며, 총 비용은 5개년 부담금 수입 증가율(3.5%)을 반영하였음. 이에 따라 총 비용은 부담금 폐지에 따른 추가 정부지원 필요금액임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	ㅇ 인건비	10,740	11,009	11,284	11,566	11,855	56,454	11,291
コネ	ㅇ 경비	296	303	311	319	327	1,556	311
지출	ㅇ 사업비	4,219	4,324	4,433	4,543	4,657	22,176	4,435
	소 계(A)	15,255	15,636	16,028	16,428	16,839	80,186	16,037
	ㅇ 부담금	_	_	_	_	ı	_	-
수입	○ 정부지원	9,104	9,270	9,439	9,608	9,325	46,746	9,349
ТН								
	소 계(B)	9,104	9,270	9,439	9,608	9,325	46,746	9,349
총 비용(A-B)		6,151	6,366	6,589	6,820	7,058	33,440	6,688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	제22조	
1	(여객선	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
1	안전운항관리)	있다.
	제7항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22조(여객선	0	
1	안전운항관리)제7항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O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의 인건비, 운항관리업무 관련 경비 및 사업비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에 '부담금'과 '정부지원'으로 구성되었음
- 부담금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수입(부담금 규모)만큼 추가 정부지원이 필요함
- 지출비용은 물가상승률(2.5%)을 반영하였으며, 총 비용은 5개년 부담금 수입 증가율(3.5%)을 반영하였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지출: '25년도 필요한 운항관리자 인건비·경비·사업비를 산출하고, '26년 이후는 물가상승률(2.5%)를 반영하였음(출처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
- 총 비용(추가 정부지원 필요): '25년 당초 부과 예정 부담금(6,151백만원)을 산출하고, '26년 이후는 5개년 부담금 수입 증가율(3.5%)를 반영하였음
- 정부지원: 기존 지출금액(A)에서 부담금 징수 예정액(A-B)의 차액(B)을 정부지원으로 산출하였음

IV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

V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윤석환 주무관	유윤진 사무관	도경식 연안해운과장	이시원 해운물류국장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유윤진	044 200 5738	didi1994@korea.kr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O 추가 정부 지원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

〈항목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○ 조세수입·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·차입	6,151	6,366	6,589	6,820	7,058	33,440
○ 회계·기금 간 전입						
○기존 예산·기금의 항목 간 조정						
○기타						
〈합 계〉	6,151	6,366	6,589	6,820	7,058	33,440

Ⅱ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O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부담금 폐지금액만큼 중앙정부 예산 지원 필요 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사업)

〈부문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□ 중앙정부	6,151	6,366	6,589	6,820	7,058	33,440
ㅇ 일반회계	6,151	6,366	6,589	6,820	7,058	33,440
□ 지방자치단체	_	_	_	_	_	_
□ 기타	_	_	_	_	_	_
<합계>	6,151	6,366	6,589	6,820	7,058	33,440

Ⅲ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○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사업 운항관리 관련 사업에 부담금 폐지금액만큼 국비 지원 필요

			2022			2023(′23.12월 말)							
	예산 액	예산	집행 액	이월	불용	본예산	예산	집행액 [실집	전년 이월액	제외 집행	이월 예상	불용 예상	2024 예산
	(추경)	현액	[실집 행액]	액	액	- "-	현액	행액]	예산 현액	액 [실집 행액]	 액	백	,, 2
○ 기능별 분류(합계)	40,160	40,160	40,160 [40,160]	-	-	44,318	44,318	44,318 [44,318]	44,318	44,318 [44,318]	-	-	39,657
· 한국해양교통안 전공단 지원	40,160	40,160	40,160 [40,160]	-	-	44,318	44,318	44,318 [44,318]	44,318	44,318 [44,318]	-	-	39,657
○ 비목별 분류(합계)	40,160	40,160	40,160 [40,160]	-	-	44,318	44,318	44,318 [44,318]	44,318	44,318 [44,318]	1	-	39,657
・민간경상보조 (320-01)	40,160	40,160	40,160 [40,160]	-	-	44,318	44,318	44,318 [44,318]	44,318	44,318 [44,318]	-	-	39,657
○ गरिमिष्ट सनिवित्र	40,160	40,160	40,160 [40,160]	-	-	44,318	44,318	44,318 [44,318]	44,318	44,318 [44,318]	-	-	39,657
·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지원		40,160	40,160 [40,160]	-	-	44,318	44,318	44,318 [44,318]	44,318	44,318 [44,318]	-	-	39,657
-민간경상보조 (320-01)	40,160	40,160	40,160 [40,160]	-	-	44,318	44,318	44,318 [44,318]	44,318	44,318 [44,318]	-	-	39,657

중기 재정계획	′23	′24	′25	′26	′27	′28
'23~'27	44,318	39,657	40,368	40,215	37,614	
'24~'28		39,657	43,206	47,416	47,992	47,928

2.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O 해당없음

3. 기타 재원조달 방안

O 해당없음

IV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

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	
		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따라 사업자	
' 24.2	기획재정부	부담금 폐지 필요, 부담금 폐지에 따른 운항관리자	
		관련 비용은 국고 지원 필요	

Ⅵ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윤석환 주무관	유윤진 사무관	도경식 연안해운과장	이시원 해운물류국장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유윤진	044 200 5738	didi1994@korea.kr